

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(2022년01월01일)

제8조(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**계약기간** -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해야 한다.

나. **계약목적**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다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
(1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
(2)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낮춘다.

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.)

마. **그 밖의 이용부담액** 및 식대,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

수 있고, 금액은 **별지**에 따른다.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 지원등급
1,520,700	1,351,700	1,295,400	1,189,800	1,021,300	573,900

○ 주야간 보호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 지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35,480	32,850	30,330	28,940	27,560	27,56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47,570	44,060	40,670	39,290	37,890	37,89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59,160	54,810	50,600	49,220	47,820	47,820
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65,180	60,380	55,780	54,780	52,990	47,820
12시간 이상	69,890	64,750	59,810	58,430	57,040	47,820

바. **신원인수 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**

(1) 권리

가)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
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또는 집기, 비품 등의 파손 및
 - 잃음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
- 바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(3) 계약의 해제 -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- 가)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나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다)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라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사) 이용료 등 수납 -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.
- 아)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.

제9조(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,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,
 이용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
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

계약서

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
날인

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0조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가. 서비스의 내용

1) 주야간 보호 :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
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
요양급여

나. 서비스의 세부 사항

(1) 신체활동 지원

- 세면 도움, 구강 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도움, 화장실
이용하기, 기저귀 교환, 식사 도움, 체위 변경, 이동 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,
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

(2) 개인 활동 지원

- 외출 동행, 병원안내 및 동행, 산책 동행, 각종 정보안내, 기타 일상 업무지원
등

(3) 정서 지원

-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 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
(4) 치매 관리 지원

- 행동 변화 대처, 프로그램 진행

(5) 송영 서비스

-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, 기
타

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